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095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3.

발 의 자:고민정·김주영·오영환

용혜인 · 김민석 · 김성주

서삼석 • 윤건영 • 김정호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 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시키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자립 이후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·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성인이되는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,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18세"를 "19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	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
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	트) ①
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	
호대상아동의 연령이 <u>18세</u> 에	<u>19세</u>
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	
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	
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	
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	
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	
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	
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	4
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면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	
·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	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
	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
	요청하는 경우
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